

CJ ENM 커머스부문 지속가능경영 공급망 정책

Sustainable Supply Chain Policy: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가치 있는 성장

제1장 정책의 개요

제1조 (제정 취지)

CJ ENM 커머스부문은 CJ그룹의 핵심 가치인 '정직·열정·창의·존중'과 <CJ인의 약속>에 기반하여, 공급망 전반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정책을 제정합니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- ① 본 정책은 CJ ENM 커머스부문의 모든 임직원 및 당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1차 협력사에 적용됩니다.
- ② 1차 협력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하위 협력사까지 본 정책의 준수를 권고합니다.

제3조 (준거 규범)

본 정책은 다음의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근거로 수립되었습니다.

1. CJ그룹 <CJ인의 약속> 행동강령
2. CJ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정책
3.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
4.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)
5. ILO 핵심협약 및 근로기준
6.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
7. 대한민국 관련 법령(근로기준법, 환경법규, 공정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)

제2장 협력사 행동규범

당사는 협력사가 적법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의 4대 핵심 영역에 대한 행동규범을 제시합니다.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, 이를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합니다.

제4조 (인권 및 노동)

①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금지

1.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, 노예노동, 인신매매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2. 근로자의 신분증, 여권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
② 아동노동 금지

1. 협력사는 만 15세 미만(또는 현지 법률이 정한 최저 연령 중 높은 연령)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.
2.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않으며,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.

③ 근로시간 및 임금

1. 협력사는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,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.
2.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,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3.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, 부당한 임금 공제가 없어야 합니다.

④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

협력사는 인종, 종교, 성별, 나이, 장애, 성적 지향, 국적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, 승진, 보상, 해고 등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.

⑤ 인도적 대우

1.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·언어적 학대, 성희롱, 괴롭힘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.
2. 징계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,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.

제5조 (안전보건)

① 산업안전

1. 협력사는 작업장의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.
2. 기계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
② 비상사태 대비

1. 협력사는 화재, 지진, 폭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피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고,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.
2. 비상구와 소화설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.

③ 산업재해 예방

협력사는 근로자가 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등 유해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

④ 위생 및 건강

1. 협력사는 깨끗한 화장실, 식수, 위생적인 식사 공간을 제공합니다.
 2.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,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.
- ⑤ 안전보건 교육
-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기록을 보관합니다.

제6조 (환경)

- ① 환경 법규 준수
1.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 2.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합니다.
- ② 환경오염 방지
1.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, 수질오염물질,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,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합니다.
 2. 폐기물은 적법하게 분류, 보관, 처리하며, 불법 투기를 금지합니다.
- ③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
1.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합니다.
 2.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.
- ④ 자원 효율 및 순환경제
1. 협력사는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,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.
 2.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고, 제품 수명 종료 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니다.
- ⑤ 친환경 포장재
- 협력사는 과대포장을 지양하고,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확대합니다.

제7조 (윤리경영)

- ① 부정부패 금지
1. 협력사는 뇌물, 리베이트, 횡령, 배임 등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행위를 금지합니다.
 2. 공무원 및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금품, 향응, 접대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② 이해상충 방지
- 협력사는 개인적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, 발생 시 즉시 공개합니다.
- ③ 정보 공개 및 투명성
1. 협력사는 관련 법령 및 글로벌 ESG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,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합니다.

2. 허위 기록이나 문서 위조를 금지합니다.

④ 지식재산권 보호

협력사는 타인의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저작권 등)을 침해하지 않습니다.

⑤ 공정거래 및 경쟁

1. 협력사는 독점, 담합, 부당한 거래 제한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2.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하고,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⑥ 개인정보 보호

1. 협력사는 고객, 근로자, 거래처 등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합니다.

2.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.

⑦ 신고자 보호

협력사는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,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.

제3장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체계

제8조 (거버넌스)

① 의사결정 기구: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(최종 승인 및 성과 점검)

② 실행 부서: ESG부서(정책 및 평가), MD본부·구매부서(선정 및 운영)

③ 협의체: ESG 실무협의체를 통한 부서 간 리스크 정보 공유

제9조 (협력사 선정 및 등록)

① 신규 협력사 등록 시 ESG 사전 평가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② 모든 계약서에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및 ESG 평가·실사 수용 조항을 명문화합니다.

제10조 (평가 및 모니터링)

① 정기 평가: 매년 핵심 협력사를 선정하여,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.

② 위험·기회 식별: 협력사 업종·규모·지역 등을 기준으로 ESG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.

③ 위험 평가: 매년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설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④ 완화 조치: 평가 결과가 미흡한 협력사에 대해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, 필요 시 계획

수립 지원 및 컨설팅·교육 등을 제공합니다. 중대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⑤ 모니터링: 협력사의 개선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하며, 결과는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
제4장 상생 협력 및 지원

제11조 (지속가능경영 지원 프로그램)

당사는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
1. 역량 강화: ESG 교육 및 고위험 협력사 맞춤형 컨설팅 제공
2. 재정 지원: 상생협력기금 운영 및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통한 금융 지원
3. 친환경 지원: 친환경 포장재 도입 지원 및 탄소 저감 기술 공유

제5장 고충처리 및 소통

제12조 (이해관계자 소통)

- ① 고충처리 채널: 협력사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나 부당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며, 신고 접수 시 내부 규정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.
- ② 제보자 보호: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,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도 엄격히 금지합니다.
- ③ 정보 공개: 공급망 ESG 성과와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을 매년 ESG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
2026년 5월 19일

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 이 선 영

